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2.8.23. 시행) 개정의 후속조치로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종전에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프로젝트 투자의 투자의무 인정 근거 마련(안 제7조)

프로젝트 투자는 벤처투자법에 근거한 투자유형임에도 현행 벤처투자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투자의무비율 인정 대상에 미포함되어 있어, 프로젝트 투자금액을 투자의무비율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근거 신설

나.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감사 주체 확대(안 제27조)

벤처투자조합의 회계감사 주체 확대에 따라 조합 청산시 제출하여야 하는 청산감사의견서의 작성 주체를 회계법인에서 감사인으로 확대

다. 개인투자조합 청산결과 보고서류 확대(안 제10조)

개인투자조합 청산인이 청산결과 보고서류에 종전에 누락되어 있던 성과급 지급명세서, 총회 의사록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추가

라.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투자비율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13조)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비율 산정시 기존의 신주 인수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 투자한 금액 외에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금액을 명시적으로 포함

마. 경영지배의 정의 관련 위임 누락된 조문 정비(안 제20조)

벤처투자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사항 중
경영지배의 정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관련
조문을 누락하고 있어, 누락된 시행령 인용 근거를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27. ~ 12.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의
인수

제10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
급의 명세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
인의 청산감사의견서
5. 청산총회 의사록 사본

제13조 중 “방법”이란을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이란 영 제15조제2항제1호
나목의 투자금액과”로, “방법을”을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을”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조제4호”를 “영 제25조제4호 및 영
제26조제3호다목 1)”로 한다.

제2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
인의 청산감사의견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1.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의 인수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		

<신 설>

<신 설>

제13조(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0조(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영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제2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급한 성과급의 명세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5. 청산총회 의사록 사본

제13조(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 -----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이란 영 제15조제2항제1호나목의 투자 금액과 이 규칙 제7조제1호 -----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을 ---.

제20조(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영 제25조제4호 및 제26조제3호다목1)-----

-----.

1. ~ 4. (현행과 같음)

제2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

-----.

1. ~ 3. (생략) 4. 「<u>공인회계사법</u>」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청산 <u>감사의견서</u> 5.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7호에 따 른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5. (현행과 같음)
---	--